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보너스주는저축보험 1704

나. 보험의 종류: 1형(적립형), 2형(거치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가. 적립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10년 만기	5년납	만15세 ~ 80세	만15세 ~ 80세	월납
	7년납	만15세 ~ 80세	만15세 ~ 80세	
	10년납	만15세 ~ 80세	만15세 ~ 80세	

나. 거치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10년 만기	일시납	만15세 ~ 80세	만15세 ~ 80세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1) 적립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최저납입보험료는 월납입보험료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거치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최저납입보험료는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적립형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된다.

(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된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신청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한다. 다만, '(다)' 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된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나)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계약자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로 하며,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begin{aligned} & \text{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 = \text{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times 200\% \\ & \quad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end{aligned}$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라) ‘(다)’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거치형

(가)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다) ‘(나)’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가.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제외하고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 보험료는 월계약 해당일에 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 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2)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 (3) ‘(2)’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는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4)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된다.
- (5)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나. 생활자금인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자금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 (2) 계약자는 생활자금인출을 신청할 때 월지급 또는 연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월지급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생활자금인출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만기시점 제외)에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연지급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생활자금인출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만기시점 제외)에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 (3) 생활자금은 계약자적립금(생활자금 인출 이전에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발생한 해당 기간의 이자금액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 (4) 계약자가 미수령한 생활자금은 만기시점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만기시점에 만기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 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 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는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β 1), 회사채 가중치(β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 + 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 - \alpha)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 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해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적립형의 경우, 회사는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마.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다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최저납입보험료 미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다.

나.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라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공제액 및 보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14. 납입완료보너스 가산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가. 회사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적립형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에 '납입완료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다만, 납입완료보너스는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종류	납입완료보너스
1형 (적립형)	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15%

나.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완료보너스를 계산한다.

다.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은 납입완료보너스를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15. 만기유지보너스 가산에 관한 사항 (거치형에 한함)

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만기까지 유지된 거치형 계약에 한하여 만기시점에 ‘만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종류	만기유지보너스
2형 (거치형)	기본보험료의 3.0%

나.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만기유지보너스를 계산한다.

다. ‘만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은 만기시점에 만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 피보험자가 만기시점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만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16. 기타

가.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적립형 : 기본보험료 × 12 × MIN [납입기간, 10년]

(2) 거치형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생활자금인출 포함)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총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① 적립형 :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

거치형 : 계약일부터 2년 이상 지난 계약

②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③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2)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된다.

(3)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4) 다만,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의 경우 ‘(3)’에도 불구하고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라.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2) ‘(1)’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5% 이내

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마.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